

의안 번호	1768	<b>【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 <b>심사보고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5. 31.(월)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5. 31.(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6. 16.(수)

### 2. 제안설명 요지(안전도시국장 김종화)

#### 가. 제안이유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척 사항 중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가 제척되어, 경관관련 중복 심의/자문 및 행정절차 이원화 등 불편함을 초래함. 또한, 울산광역시 내 타 구·군 경관조례와 형평성을 맞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경관사업협의체 구성·운영 (안제9조~ 제11조)
- 경관위원회 기능·위원회구성·위원임기·위원회 운영 등 (안제24조~ 제31조)
-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 다. 근거법규

-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경희)

- 법령에 근거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인 경관위원회 조문을 구체적으로 정비 하였고, 특히,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제척사항 중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을 추가함으로써 경관 관련하여 중복 심의/자문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또한 법령에 근거한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체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검토 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개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는 사항 (제척사항)>

-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 2)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7.6.26.>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근거법규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2., 2015. 12. 28., 2016. 7. 6., 2017. 2. 28., 2017. 7. 26.>

- 1.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회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연구개발특구위원회
  - 사. 「항만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